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62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김태선·김병주·이훈기  
박 정·허 영·김용만  
서미화·윤후덕·김영환  
강준현·백승아·한민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격화로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과정에서 히트펌프 보급을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위기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열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열에너지 소비의 탈탄소화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주로 전력 생산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열에너지 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재생가능 열원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열에너지 관련 지원과 보급

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공기열 및 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열에너지를 포함함으로써 열에너지 소비 부분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해외 화석연료 수급 불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2호마목).

법률 제 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  
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열에너지(공기열·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을 포함한  
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부 칙

이 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 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 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 라. (생 략)</p> <p><u>마. 지열에너지</u></p> <p>바. ~ 아. (생 략)</p> <p>3. ~ 5. (생 략)</p>	<p>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u>마. 열에너지(공기열·지열·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u></p> <p>바. ~ 아. (현행과 같음)</p> <p>3. ~ 5. (현행과 같음)</p>